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시정명령 근거 신설〉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34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허성무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27.
3. 회부연월일 : 2026. 3.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 기술정보, 제조 노하우, 고객 명단 등 영업비밀은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위법하게 취득·사용·공개되어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존립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은 물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

현행법은 영업비밀의 훼손·변경·위조·유출, 직무 관련 비밀 누설 및 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벌칙 적용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의 기술 정보 유출, 해킹사고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제재방안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시정명령의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국가 경제 및 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지식재산처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권한을 부여하고(안 제9조의5,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② 영업비밀 침해자에게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며(안 제12조의5), ③ 신설 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임(안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5(과징금) ① ~ ③ (생략)	제9조의5(원본증명기관에 대한 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12조의2(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조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그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진행 중에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분쟁조정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양 당사자

<신 설>

<신 설>

<신 설>

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조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의견청취) 지식재산처장은 제12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의5(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과징

제13조(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 ①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략)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부터 파목까지, 제3조, 제3조

금)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 ① -----

---제12조의5까지의-----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

의2, 제3조의3,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18조제4항 및 제20조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① · ② (생략) ③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나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생략) ② (생략)	-----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4항----- -----.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7조, 제8조,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에-----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과태료) ① ----- ----- -----. 1. 제7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 1의2.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의3제1항에-----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영업비밀 침해 행위’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¹⁾,

현행법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시정권고·시정명령 등 지식재산처의 행정처분 권한 규정이 있으나(제7조부터 제9조까지)²⁾,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처분 권한을 두고 있지 않고,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민사적, 형사적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

-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최근 5년간 부정경쟁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접수건수	114	133	152	177	180	756
시정권고	0	2	0	1	2	5
자진시정	26	81	42	67	86	302
신고철회	6	8	40	26	22	102
기타	39	36	47	37	67	226
처리 건수	71	127	129	131	177	635

자료: 2024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³⁾,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발생 빈도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영업비밀누설죄 접수 및 처리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접수	건	376	238	309	360	328	1,611
	명	903	584	746	842	687	3,762
처리	건	348	317	295	311	345	1,616
	명	873	801	733	703	735	3,845

자료: 2024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국가지식재산위원회), 대검찰청

영업비밀 국외누설죄 접수 및 처리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접수	건	32	19	20	42	38	151
	명	78	76	58	85	100	397
처리	건	35	20	18	32	34	139
	명	75	76	59	65	85	360

자료: 2024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국가지식재산위원회), 대검찰청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소송(1심)의 처리 기간이 2024년 755일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길어 영업비밀 침해 피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이 되고 있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법적·사후적인 구제보다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⑥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2024.2.20. 법률 개정으로 “3배”에서 “5배”로 상향

제18조(벌칙)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19.1.8. 법률 개정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민사본안(1심) 처리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접수(건)	21	28	25	22	19	115
처리(건)	11	21	22	25	28	107
평균 처리 일수(일)	498.3	789.4	524.2	823.0	755.6	702.8

자료: 2024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국가지식재산위원회), 법원행정처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처리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접수(건)	34	31	38	39	17	159
처리(건)	32	31	34	40	21	158
평균 처리 일수(일)	125.7	131.5	117.0	108.1	167.3	126.0

자료: 2024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국가지식재산위원회), 법원행정처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행정적 대응수단을 활용하여 신속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의한 변경 내용(행정처분 권한 신설)

현 행		개 정 안	
민사	- 손해배상 (최대5배) - 침해금지 - 신용회복	민사	- 손해배상 (최대5배) - 침해금지 - 신용회복
형사	- 국외: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 국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형사	- 국외: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 국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행정	-	행정	<u>조사·시정권고·명령</u> <u>100억원 이하 과징금</u>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조기에 차단하여 피해 정도를 감소시키고, 시정명령·과징금 등은 일정한 위하적 효과⁴⁾를 가지므로 영업비밀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구체적으로 既도입된 부정경쟁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대응수단과 개정안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적 대응수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현행법(부정경쟁행위)과 개정안(영업비밀 침해행위) 비교

구 분	현행 부정경쟁행위	개정안 영업비밀 침해행위
행정조사	○ (제7조)	○ (안 제12조의2)
자료열람 요구	○ (제7조의2)	X
시정권고·시정명령	○ (제8조)	○ (안 제12조의3)
의견청취	○ (제9조)	○ (안 제12조의4)
과징금	X	○ (안 제12조의5)

개정안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적 대응수단과 체계 및 조문 구성이 거의 유사하지만 ‘당사자의 자료열람 요구’ 규정은 미도입한 반면, ‘지식재산처장에 의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추가로 도입하고 있음.

과징금과 관련하여 안 제12조의5⁵⁾는 지식재산처장이 위반행위로 얻

4) 위하적 효력: 형벌이나 기타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효과

5) 안 제12조의5(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

은 이익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정지 대체형 과징금으로는 상한이 100억원인 과징금 규정 사례가 있지만⁶⁾, 행정제재형 과징금으로 100억원을 규정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여 액수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반도체·배터리 등의 첨단산업 분야 기술유출로 피해가 수조원대에 이르고⁷⁾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과징금이 영업비밀 침해를 예방하는 억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 상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한편, 영업비밀 침해 조사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임 법령 및 지침 등을 통하여 영업비밀 유출 방지 장치 또는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장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항공안전법」 제92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38호까지 또는 제40호부터 제4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7) “삼성 직원, 기술유출로 중국 첫 D램 개발…검찰 “작년 5조 피해”, JTBC뉴스, 2025.10.1.
“반도체 등 산업기술 유출 피해, 5년간 23조원”, 뉴시스, 2026.1.14.

특히 안 제17조제3항⁸⁾은 지식재산처가 영업비밀 침해 조사에 대해 전문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문단체와의 협업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 체계·자구적 검토사항으로,

1) 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5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위반행위”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부정경쟁방지 조문과의 구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정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침해행위”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2) 안 제12조의4는 “지식재산처장이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재량적인 표현(필요하다고 인정하면)과 기속적 표현(의견을 들어야 한다)가 동시에 사용되어 모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⁹⁾.

8) **안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③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 제8조,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9) 주: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규정한 현행 제9조에서도 유사한 내용에 대해 개정안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안 제12조의4를 수정하는 경우 현행 제9조를 함께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견청취)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458